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납부최고서)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징수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국유사용료 압류예정통지	창* EMS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91길 *~*(신길동)	23,923,780 원	건물대여료
국유사용료 압류예정통지	김*태 (미*인학원)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1동 ***호(행당동, 성동샤르망)	6,462,070 원	건물대여료
국유사용료 납부 최고서	포**삼, 노*철	서울시 노원구 성발로 229, 8동 ***호(하계동, 건영아파트)	8,453,050 원	건물대여료
국유사용료 압류예정통지	메이**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35나길 3*, *층(**빌딩)	6,384,850 원	건물대여료
국유사용료 압류예정통지	양*숙 (미*인학원)	서울시 성동구 상원6가길 **(성수동1가)	3,289,050 원	건물대여료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